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2. 17.(목) 09:4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4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전차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서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5-69-29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주식회사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나노포인트, 주식회사 라이온시큐리티, 주식회사 로플랫, 주식회사 마이비, 주식회사 이비카드, 주식회사 커넥티드에잇, 하누리 주식회사 등 10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10월에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개 법인이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허가 신청 법인 주요 현황이 있고,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심사기준과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기준은 우리 위원회 고시인 「위치정보사업자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였고, 심사결과는 다음 4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개 법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및 심사사항 점수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해당되는 사업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산은행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 같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부산은행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투자계획이 미흡했고, 기술적·관리적 위치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하는 법인들을 보면 벤처 같은 소규모 작은 법인들도 있지만 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은행 같으면 은행 사업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의아합니다. 이런 은행들이 위치정보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위치정보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여태까지 이런 위치정보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도로공사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패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전국에 있는 도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도 유·무선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서 아마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통정보서비스를 도로공사만큼 실시간으로 잘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세부 구간별로 교통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 한국의 위치정보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위치정보사업' 그러면 보통 GPS를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비콘(beacon)을 이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동향이나 발전되고 있는 추세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소관하는 시장별로 현황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상황 평가와 같이 더 디테일하게 심층적인 분석도 많이 하는데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부터 시장조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처럼 은행에서조차도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마케팅, 영업활동을 하려는 마당에, 저희가 이러한 시장 현황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적인 동향을 정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빨리 분석을 해서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뭔가 산업 자체를 붙여시키는 역할을 우리 방통위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을 새로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지속적으로 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정보사업 내지는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안전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이전에도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해 왔고, 이번 달 안에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부산은행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기주 위원님께서 먼저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부분은 세부 평가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치정보 관련해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식은 다르겠으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의 역량들을 보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은행이라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융고객의 정보보호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혹시 그것도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부산은행이라는 곳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부산은행은 금융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저희 위치정보보호 조치 적정성 부분에서 위치정보에 특정한 권리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치정보에 특수한 보호조치들이 미흡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지난번에 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한 곳을 직접 한 번 가 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직접 가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특정 기업입니다만 물류나 보험 등 상당히 많은 곳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금융권이 왜 이것을 신청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지원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별 허가를 내주는 사업자들을 1:1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업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건의하

고, 또 관련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띤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업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업계 자율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협회를 만든다거나 단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체를 좀 더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나서서 강하게 ‘협회를 만들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표성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만드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지금 그러한 방법도 포함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이디어인데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박 국장께서 차제에 위치정보사업팀을 하나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무관 한 분, 주무관 한 분 해서 두 분은 24시간 위치정보사업만 고민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큰 과 밑에서 허가 심사만 일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드려 봤자 또 직원이 없으니까 박 국장 차원에서 특단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회 회의 때만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야기 나오고 또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 최성준 위원장

- 위치정보만 전담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치정보 담당하는 직원은 정해져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담당 사무관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그 업무 이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특히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치정보사업은 어찌 보면 초창기 단계를 넘어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이때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방안, 또 꼭 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 플러스 위치정보보호사업이 자신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위치정보를 철저히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

니까 보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에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산업적인 진흥, 그다음에 또 철저한 보호가 균형이 잘 잡힌 정책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15-69-29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은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지난번에 고시안은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의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다음 3페이지입니다. <5>번에 지난 11월에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주요 변경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 1>에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 중에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관보 게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의 인가 없이….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그전에도 인가 사례는 일부 있었고, 다만 소위 말해 세부 심사기준 관련된 것 없이, 고시 없이 그냥 저희들이 다른 유사한 심사 사례를 참고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거의 대부분 준용하되, 일부 인가에 맞게 배점 등을 수정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사실상 이 고시가 제정되기 전과 후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저는 이 고시 제정을 계기로, 오늘 앞의 안건에도 보면 위치정보사업자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고시가 제정 되면 협회도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져서…, 기존 사업자들 간 M&A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어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내지는 국내 산업상 경쟁력을 높이는 등등 그런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우리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것이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SKB와 CJ헬로비전의 위치정보사업 인수합병 건이 이번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첫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말한 취지와 사례로 드신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제목이 큰 이야기라 이것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의결안건가> '위치정보사업자의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있어서 의결주문은 '10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하는데 <붙임 3>에 있는 것처럼 허가조건을 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주문에 '<붙임 3>과 같은 조건을 붙여서 위치정보사업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타 심의했던 안건 기준을 놓고 보면 허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통상 다른 안건들은 주로 본문에 표기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붙임>보다는 본문에 허가조건을 딱 적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이 밑에 4. '허가심사 및 심사결과'에서 '적격으로 판단하고,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적격으로 판단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허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의결주문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5-69-29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되어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운영에 최대액출자자의 과도한 영향력이 작용하는 점, 상당한 영업이익에도 사회공헌 및 방송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동의한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확대 계획, 시청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그리고 <1>~<5>항까지의 계획 또는 방안을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래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자,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 항목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평가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699.92점을 받아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점수인 65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 건의사항은 의결주문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6>번 항목 종합의견입니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미래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붙임 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미래부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형식에 관한 것이지만 ‘부족함 점을 고려하여 아래 조건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1>~<5>까지 계획 방안을 쪽 써 놓고 <6>번, 그다음에 ‘<1> 내지 <5>까지 계획 방안을 이렇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조건으로 동의한다’ 해서 ‘조건’ 해서 ‘아래 <1> 내지 <5>까지 계획 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심사를 고삼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심사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추가로 설명드려야 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한 뒤로 위성방송사업자나 케이블, SO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해서 금년 초에 기본계획도 의결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평입니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미래부와 유기적인 협의 하에 미래부 심사, 저희 사전동의 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상당히 꼼꼼하게 성실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에 대해서 공적책무나 그다음에 경영계획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간략히 되어 있는데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허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는 여기에 나와 있다가 피 통신사업자인 KT입니다. 두 사업자 간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이 꼭 살펴보니 스카이라이프의 이사회 구성 멤버나 주요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논의구조에 KT 쪽 인사들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요한 결정들이 다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업자로서 스카이라이프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대주주인 KT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 스카이라이프가 운영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상에 맞지 않게, 그리고 KT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한 이후에 보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은 과거에 했던 식으로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그러한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의 위상에 맞는 사회공헌 분야의 사업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 의결주문 순서를 바꾸는 것은 형식적인 것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69-29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는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최종 시행령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품판매방송 편성의 일방적인 취소 금지와 관련하여 홈쇼핑사가 사전합의 없이 상품판매방송의 편성을 취소하여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자가 사전제작비 손해를 감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품판매방송 편성의 일방적인 변경 금지와 관련하여 홈쇼핑사가 사전합의 없이 상품판매방송의 편성을 변경하여 납품업자에게 판매부진으로 인한 손해를 입히거나 납품업자가 물품 준비가 부족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수익배분방식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매출의 일정률을 수취하는 정률제와는 달리 홈쇼핑사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를 강요하여,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의 수용을 방송편성의 조건으로 삼아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 취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작비용 전가 금지와 관련하여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출연자의 출연료·세트 제작비 등을 지급하게 하는 등 방송사가 부담해야 할 제작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5>번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12월 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대면심사 한 번 받고, 서면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때 논의가 됐던 주요 이슈가 무엇이고, 그래서 수정이 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란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2호가 있는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정액방송의 순기능을 고려한 조문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 자체가 금지되는 되는 것이 아님을 조문상 명확히 하게 되었는데 <표>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다만, 보험, 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이 표현을 추가로 넣게 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규제개혁위원들이 의견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홈쇼핑업체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위나 다른 관계부처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이것은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액제 문제가 굉장히 폐해가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의 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자” 그렇게 되어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또 하나는 앞으로의 일정인데 지금 차관회의·국무회의가 잘해야 앞으로 두 차례 있을 것 같은데, 일정에... 법제처와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이미 사실상의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12월 말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률의 시행은 이미 됐는데 하위법령이 안 되어서...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3일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차관회의와 그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서 연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규제하겠다는 주요 항목별로 관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관련된 방송법 개정 이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용한 관련 사례, 언론보도 내용은 단순히 언론보도 내용만 여기에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시행령 금지행위와 관련한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고, 지금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언론보도만을 저희가 적시한 것입니다. 면접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적시된 내용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납품하시는 분들에게 이 초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도입되면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3>번 '특정 수익배분방식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 이것은 정액제를 주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납품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홈쇼핑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이 정액방송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홈쇼핑사업자는 정액제로 운영할 경우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방송시간만큼 미리 선비용을 납품업자가 지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판매율에 따라서는 정률제로 또 일부 가져갑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액제라고 해서 정률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제에서 정률이 낮을 뿐인 것이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혼합제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혼합제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품이나 아니면 할인들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납품업자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것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을 위반했다면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액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업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수용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권은 정액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홈쇼핑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는 특정 시간대에 '이 시간대는 정액제로만 운영합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미래부의 승인조건 등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상관행을 보면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정액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납품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시간대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액제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구성한 법문의 요건처럼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실태파악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시행령 개정과 함께 바로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자료를 분석해서 불만 사항이나 계약사항은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금년 초에 홈쇼핑 관련된 방송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보, 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납품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의 제정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장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홈쇼핑과 거래업체 간의 거래관계인데 종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이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법을 금년에 개정함으로써 우리 소관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감독, 공동업무입니까, 우리 전유권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우리가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폭넓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중복으로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방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행위, 동일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공정거래위도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일단 이것이 저희 영역으로 합의가 됐고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합의가 된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예전에 법 개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 편성, 보도를 중개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우리가 소관업무로 해야겠다는 취지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소관업무로 잘 정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말씀하신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에서 뒤에 '동일한 사유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통위의 전속 관할에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 분야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금지행위 유형에 관해서 조사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우리는 홈쇼핑사들이 대기업으로서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5년 전, 10년 전에 많이 있었던 일들이고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제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런 유형들이 다 드러나고 시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방통위가, 특히 사무처에서 '이런 것을 처음 한 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정위도 주로 중소납품업체의 신고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아까 '실태점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공정위의 그간 자주 반복된 조사·제재가 있어 왔는데, 홈쇼핑 시장 자체가 아주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행위들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내지는 깊이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딱 실태조사하면 뭐가 딱 나타날 것 같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방송시장,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이러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는 일반 경쟁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다른 형태로 가야 한다, 방송시장을 잘 아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어프로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와 같은 시행령 규정을 만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시행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태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적으로 자신의 권리라고 하면서 다시 또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미 설문 조사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주로 납품업자들 쪽에서의 신고나 정보제공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납품업자들이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을 테니까 이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

을 제대로 홍보해서 흡쇼평업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고, 납품업자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져 원활하게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2015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 부산문화방송(주) 등 6개사 (2015-69-29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마> ‘2015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주)대전방송 등 총 6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붙임 1>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 참고로 2015년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지역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문화방송(주)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등 6개 재허가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평가의견입니다. 허가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지상파DMB는 스마트미디어 확산 및 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동방송 매체로서의 경쟁력 약화 및 수익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지상파DMB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해 허가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허가 신청사업자에 대한 심사의견과 관련해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매체역할 제고 관련해서 심사대상 DMB사업자들은 지상파DMB의 실시간 이동형 방송서비스라는 매체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상파TV의 재전송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지상파DMB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므로, 지상파DMB의 전용 콘텐츠 개발 및 편성 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지상파DMB의 매체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심사대상 DMB사업자들은 지상파DMB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없이 모두 겸직상태로 인력을 운

영하고 있어 향후의 지상파DMB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확실해 보이므로,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심사대상 DMB사업자들이 지상파DMB의 이동방송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술, 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상파DMB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가 낮고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므로,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상파DMB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정례적인 이행점검을 통하여 재허가 신청 사업자들이 재허가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지상파DMB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자 재난방송 매체인 공익적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심사 결과는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되, 허가 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관사항으로 명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부산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주)대전방송의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심사 결과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되,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3년으로 부여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상파DMB 서비스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상파DMB의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재허가 조건의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정례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서는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DMB는 도입한지 10년째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도입될 때 여러 정책검토와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지역지상파 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조건부 지적사항에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DMB에 대한 전담인력, 전담기구 없이 전부다 겸무, 겸직 형태로 하고 있고, DMB 전용콘텐츠 투자는커녕 그 인식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난시청 지역이 개선되지 않고 거꾸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웬만한 터널과 지하공간에서는 DMB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질이 좋지 않다, 불안정하다, 흔들린다는 불만들이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경영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광고수입이 전무한 상태이고, 애초에 허가해 준 채널

들을 다른 방송사,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데에 임대해 줌으로써 임대료 5,000~7,000만원 사이가 유일한 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 정책의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고,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지상파 심사할 때에도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연구·논의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책당국뿐만 아니고 방송사업자들의 경영진인 최고책임자인 사장들이 직접 참석해서 의견 청문을 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서 작년에 KBS 조대현 사장, MBC 안광한 사장, SBS 이웅모 사장이 직접 다 참석해서 의견진술을 했고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의결하는 6개 방송사만 우선 의결하고 발표하는데 원래는 7개 대상 사업자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KBS의지역 DMB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DMB 심사 기본계획에 작년부터 이번에는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책임자가 와서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대리참석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 보면 KBS 사장의 의견청취 일정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리참석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다른 방송사와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마련된 기본계획과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행세칙은 직접 사장들과 함께 논의한다,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KBS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 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결과도 그렇고, 지상파DMB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해 봤던 지역공동체라디오 이렇게 저희가 매체별로 재허가 심사나 허가 심사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나 사무처에서 참여하고, 또 외부전문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허가든 재허가든 신청한 법인과 토론도 하는데, 저는 그 세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재허가 심사 결과다', '누구는 재허가 이렇게 한다', '재허가 조건은 무엇으로 한다' 이것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상파DMB가 론칭한지 11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나온 정책 건의사항이나 공통의견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R&D 투자가 되어야 한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모르기는 몰라도 재허가 심사할 때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방통위가 내년에 업무계획 준비도 하느라고 사무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방통위의 업무가 규제업무, 또 순수한 정책업무도 있지만 이런 것

이야말로 아주 진흥적인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DMB 서비스, 저는 지상파DMB가 꼭 활성화 되도록만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시장에서 현재 스테이터스(Status), 포지션(position)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 가야 할 것인지, 뒤로 가야 할 것인지, 옆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차원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꼭 활성화, 육성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지상파DMB인 경우에 미래부와 같이 해야 하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지상파DMB는 일단 저희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심사하는 도중에 또 허가 심사결과 안건으로 올려서 이때 또 ‘활성화를 하자’, ‘R&D 투자를 하자’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상파DMB 서비스가 11년 되어 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정책방안이 이번만큼은, 내년만큼은 나와서 액션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사무처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업무가 규제업무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규제업무에 진흥적인 성격도 아주 강하고, 위치정보사업인 경우에 방통위가 허가 여부 심사에 의한 규제업무뿐만 아니라 정책, 진흥, 산업 활성화까지 모든 것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관장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허가 심사결과 의결안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가 이번만큼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상파DMB 서비스에 관해서 우리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서 실제 시행에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방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상파DMB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 근본적으로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애초에 출발했던 그 당시의 DMB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DMB가 별도 방송사업으로서 과연 그런 가치가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판단, 그다음에 특히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이동 간에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었던 것에서 DMB가 생김으로써 지상파를 이동 간에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지상파 본방송과는 다른 별도의 DMB라고 하는 방송을 별도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동 간에 지상파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도 DMB방송이 재난방송의 하나의 중요한 재원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예산까지 넣어서 지상파DMB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터널이나 이런 지하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매체인 지상파가 이동 간에도 언제든지 수신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연 지상파 정책, DMB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굳이 지상파의 경우 이동 간에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정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타 또 다른 일반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해서 이원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정책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발전방안으로 자꾸 매체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불필요한 투자를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인적·물적 모든 재원을 새롭게 자꾸 지상파DMB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면 지금 지상파로서는 광고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또 UHD를 향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과연 DMB라는 이 사업에 별도의 인력과 투자해야 하느냐, 그것이 과연 우리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상파DMB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허원재 위원님, 이기주 위원님 의견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금년 초에 수도권 지상파DMB 재허가와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DMB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과제를 그때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진행되고 있습니까?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지역 지상파DMB 재허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지상파DMB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면 또 1년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사업자를 허가해 주는 정책만 하고, 만약에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사업이 불필요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내주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회수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에 합당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절차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말씀드려서 지금

정책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보고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 추가해서 담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내년 초에는 보고서를 토대로 지상파DMB 정책을 그때부터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약간 제출시기를 늦추더라도 이번에 DMB를 심사하면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항목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DMB의 이용 상황에 대한 확실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해서 내년 초 DMB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이와 같은 공통조건과 개별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DMB에 대한 종합정책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재 검토기간입니다. 작년에 중앙 지상파DMB 심사가 완료된 뒤에 부대의견으로 ‘종합정책 검토를 하자. 3년 이내에 하자’는 것을 달아서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DMB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인식이라고 할까,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책임자들을 꼭 만나서 의견청취를 하고 같이 논의하자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KBS, MBC, SBS 등의 사장들에게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기만 하고 수익이 안 생기니까 마치 맹장처럼 여긴다면 차라리 채널을 반납해라. 반납하면 한국DMB나 유원미디어처럼 독립DMB사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뭔가 경영개선을 하려고 뛰는 모습도 보이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왜 큰 방송사일수록 DMB를 맹장처럼 취급하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들의 답변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면 이동 간 KBS, MBC, SBS 지상파를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매우 중대한 상황인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DMB를 가져가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도 배정해야 하고, 인력도 만들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서는 “지금 본방송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이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수익 창출이 결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DMB 수익 창출을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결국 광고입니다. 특히 지역 지상파DMB의 경우에는 지역에 작은 광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체, 영세업체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업체들의 광고가 있는데 한국DMB인지 유원미디어인지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게임이 벌어지면 음식배달업체의 광고를 넣고, 또 대리기사업체의 광고도 넣고 이런 식으로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뛰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 미디어랩법 때문에 KOBACO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전담인력이 없고 영업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율화할 수 없느냐?”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DMB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작은 일정액 미만의 DMB 전용광고에게는 KOBACO를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말까지가 이번 심사대상 7개 방송사의 허가기간입니다. KBS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자 의견을 청취한 뒤에 전체 상황, 전체 문제에 대한 감을 잡은 뒤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채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KBS의 경우에는 사장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그냥 채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점수가 어떻게 나올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조건부와 권고사항이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실효성은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KBS가 지역DMB 심사에 차질 없이 응해 주는 것이 저희의 정책검토에 관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제가 지상파DMB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논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 지상파의 본방송이 이동 간에도 100%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파가 가정에서도 앉아서 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들 핸드폰과 차량에 있는 DMB 기기를 통해서 항상 움직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이 이동 간에도 똑같은 본방송의 내용이 수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지상파 중심, 또 공영방송의 중심인 이 체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DMB를 별도의 본방송과는 다른 편성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20% 정도는 다른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아닙니다. 지역DMB 같은 경우에 의무편성 비율이 없습니다. 거의 재송신만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지상파방송의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상파 본방송을 지상파DMB로 그대로 100% 방송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예.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까?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편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재송신 도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DMB의 경우에는 지역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체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렇지 않지요. 지역에 본방송도 우리 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지역에 있는 자기들 프로그램 편성을 우리가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송의 경우에, 그리고 중앙은 중앙대로 자기들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나오는 DMB를 그대로 재전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파방송은 자체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편성을 재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DMB로 송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재편집조차 없이 서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중계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논점은 현재 지상파방송이 각자 자기들이 송출하고 있는 지상파가 이동 간에도 100% 편성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이외 기타 채널에 관해서는 일반 별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DMB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남은 KBS DMB에 대해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6년도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6년도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목적입니다. 심사목적은 2016년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신청하는 지역방송사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심사대상은 지역 지상파TV방송사 중 2016년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신청하는 방송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제6항 및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2조의 기금지원 제한 사유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라>항목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지원 제한 결정기준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지원 제한 사유로서 첫 번째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한 사유별로 지원액을 감액하되, 감액율은 30% 이내에서 결정하고 제한 사유별로 해당사항의 양적·질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되, 재허가 조건의 경우 이행여부 또는 이행 정도를 반영하고, 제한 사유 해당사항이 양적·질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금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금지원 제한 사유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성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공모

를 하고, 2월에는 지역성지수 평가 및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하며, 3월에는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 중 하나인데 그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고삼석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1년 내내 이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9명의 위원들이 열심히 심의를 했습니다. 또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방송발전지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지원하되, 이 3가지 사안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 평가에서 지역성지수에서 일정 수준 미달하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에는 각각 감액을 하든, 아니면 아예 전액 배제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지역성지수 1,000점 만점에서 600점 미달할 경우에는 완전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이 지역성지수를 개발하느라고 상당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체적인 기준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1년 동안 한 결과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시느라 수고해 주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인 허원제 위원님, 또 고삼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추가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자칫하면 저희가 앞서 지역성지수 평가를 통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적인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부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자들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내용을 모르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지역성지수 평가를 보면 내용·편성 영역에 한 8가지 항목, 운영영역에 10가지 정도 해서 총 18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니까 지역방송들의 평가를

위해서 갑자기 업무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방송평가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류재영 지역방송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실 때 제 생각은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줄 정도는 관련해서 지역방송들이 평가나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과도하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송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는 최소화했다는 부분이 언급되면 아마 지역방송사들이 걱정을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덧붙여서 지역성지수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점수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항목 중에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지역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새로이 기울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역성 구현을 위해서 하던 것을 꾸준히 하는 경우에는 지역성지수 평가에 있어서 소위 600점을 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예산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동안 우리 방통위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난해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비로 23억원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2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원이 증액되어서 3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라는 예산의 증액이 있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은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4억원이 처음으로 배정이 됐고, 그리고 지역방송에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3억원이 별도로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부 40억원이 배정되어서 올해 23억원에 비하면 73%라는 굉장히 엄청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통위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방통위 일원이기는 한데 지역방송 발전에 기여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안건이 오늘 보고가 되면 보도자료가 됐든 뉴스로 릴리스를 할 때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 심사기본계획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시행, 예산 관련,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는 것,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성 측면에서 17개 시·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 아이템도 하나 들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과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고, 또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들을 다 종합할 때 절대적인 예산 규모 자체는 지역방송사들이 생각하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과 대비해서 효과성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졌다, 많이 발전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정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금년 6월 22일 특수관계자의 외주비율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이 개정되었고, 내년 3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금년 6월부터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9월까지 순수외주비율 등 개정 논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입니다. 안 제58조제1항에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제명 및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방향은 방송법 개정 시 국회 미방위에서 부대의견 등을 고려해서 현행 외주제작 편성비율에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을 제외한 비율보다 높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은 현행 외주제작 편성비율 40%에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8.4%를 제외한 31.6% 이상 규정하면 됩니다만 현재 KBS1을 제외하고 실제 방송사가 외주제작한 현실이 5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순수외주비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 제58조제2항은 방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8조제3항 및 제5항은 자구 조정 및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입법예고를 40일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개정내용 중 <가> 세부방안에 ‘현행 비율 40%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상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은 결국에는 우리 고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앞으로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각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론 지금까지도 수렴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외주제작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고시를 통해 결정되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맞춰서 지금 시행령에 있는 최상한의 비율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현재는 시행령을 3월 23일까지 마쳐서 시행을 하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있는 것처럼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인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우선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나 외주사, 이해관계자,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조정안을 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순수외주비율 상한이 정해지고, 고시에는 방송사업자별로 KBS1, 2TV, MBC, SBS 그리고 지역MBC 등 그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우리가 지금 외주제작과 관련해서 그동안 쪽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외주제작에 대한 편성비율이 있고, 또 그 속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편성비율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수관계자 비율을 폐지하는 대신에 순수외주제작이라는 단일화된 한 규제체계로 가져가자고 해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은 이미 없어진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없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이 물론 각 사별로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편성비율이 사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주제작의 편성비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지요. 그 선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특수관계자 비율이 없어진 만큼 어떻게 보면 수치도 낮춰져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법 등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남겨 놓고 일단 입법예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외주제작 편성비율 40% 유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들 MBC, SBS는 이것을 35%로 완화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상한도 40%에서 특수관계자 비율을 뺀 31.6%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다소 높은 35% 정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와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참 어렵게 해서 합의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외주제작사들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면 지상파들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40%에서 35% 정도로 낮출 수 있겠다, 이런 합의안이 마련됐던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비율 낮추는 것까지는 아니고 2016년 이후부터 방송사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을 허용하고, 외주사에게는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 그때는 방송사와 정부, 외주사들 포함해서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또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상 포함시키는 것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서로 연계되어서 이것이 되면 비율이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국회에서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MBC와 SBS는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하는 문제를 동의했고, 그 대신 외주제작편성 의무비율을 낮춰 달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지요? 그쪽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KBS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KBS 측에서도 검토해서 조만간에 저희에게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협의 중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검토 중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국회에 다 올라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갔는데 “이것이 상정조차도 안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저런 협의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상파방송사가 아직 협의가 안 됐는지 하여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제출안인데 다른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충분히 협의도 했고, 또 다른 지상파방송사들과도 협의했는데 KBS만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방송사를 각기 상대할 것이 아니라 방송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방송협회가 있으면 방송협회가 책임지고 자체 내 논의, 합의를 만들어 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개별방송사를 다 상대해 가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방송협회에 책임을 주고 합의안을 만들어 와서 주고받고 하든지 와서 논의하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다 되어 있고, 저는 진짜 법안 공부까지 하고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힘이 있는 어떤 지상파방송사 하나가 반대하면 정부부처 간 협의하고 다른 지상파방송사들 다 동의한 것도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논의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당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건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외주제작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도 KBS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협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관련해서 국회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리랑 국제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방통위와 문체부 정부 관련부처 간에 협의가 다 됐고, 상정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다 준비해 갔는데 국회 현장에서 어떻게 빠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정부정책 규제기구인데 우리와 협의해야 할 대상 방송사업자들이 우리와 협의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뒤로 가서 아니면 빠져 나가서 국회를 직접 상대해서 로비하고 거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절차상 문제가 매우 큼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와 협의할 때 충분히 의견진술하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반대를 하든지 여기에서 하고 말아야지, 같이 책임을 지든가 해야지요. 논의하다가 의견수렴이 안 되면 국회로 쫓아가서 거기 가서 로비인지, 압력을 가하든지 반대의견을 계속 주장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책 정부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담당 사무처, 담당 국·과에서 대상사업자들에게 저는 엄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정부기구 정책당국으로서는 무시당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구 일원화도 아니고 이것은 도대체 국회 가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리랑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체가 되는 법안이 아니고 아리랑방송사가 문체부를 통해서 제출한 법안이고, 저희는 단순히 그 법안에 대해서 일부 내용에 관한 협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에 대해서 아리랑법의 내용을 서로 논의를 해서 저희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거기에 담아놓았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은 다음에 따로 논의 내지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순수외주제작사 내지는 독립 프로덕션은 문체부의 어떤 법에 대략 어떻게 규율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독립제작사는 문체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논의 중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우리 방송법 테두리 안으로 소위 말하는 독립 프로덕션도 일부 포섭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통위에서는 앞으로 방송시장의 전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그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것이 지상파다, 종편이다, PP다, 케이블TV다 이렇게 했다면 외주제작사들은, 기존 우리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 있었지만 분명히 방송시장 생태계의 주요한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단말기유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이통사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있고, 또 휴대폰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말기유통법상의 예를 들면 대리점이나 단말기 제조업체, 그리고 방송법상의 순수외주제작사를 다른 관련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앞으로 방통위의 시각은 기존에 우리가 관장하거나 우리 법에서 규율되어 있는 사업자 외에 그 생태계의 일원인 사업자군도 방통위가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으로 전체 생태계를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하든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할 때 그런 시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건 내용을 보면 순수외주제작사는 전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방통위는 지상파, 지상파, 지상파입니다. 저희는,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라고 할까?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요. 다른 부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다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전체 방송시장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도 개선하고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특하면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지상파 오리엔트되어 있고, 외주제작사는 문체부 쪽이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방통위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식에서는 탈피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지상파와 외주제작사의 이해관계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사무국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주제작사들을 드라마제작사나 독립제작사와 함께 나누어서 직접 만나서 그쪽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건의사항들이 저희 전체 방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더 길게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된 내용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정부의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고, 이 내용에는 저희 방통위 소관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그리고 미래부 소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가 협의해야 할 것,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야 할 것,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이나 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저도 여기에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고유한 정책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적 합리성도 나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단말기유통법 개정이나 지원금 제도개선이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핵심내용들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었고, 또 사전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경제부처, 즉 기재부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한 보도를 보면 ‘정부의 위험한 경제 띄우기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놓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동상이몽이다’, ‘오락가락한다’, 저희의 의지와 무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위원회 내부의 논의나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담을지 여부는 기재부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다만 단말기유통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가장 일반적인 문구를 거기에 기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시행결과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 지원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가장 일반적 인, 단말기유통법이 어느 정도 시행기간이 되면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저희는 문구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문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전혀 거기에 그런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을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고 당연히 저희 담당국에 확인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기사를 쓴 일부 기자들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떤 배경 하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특정인을 지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된 기관의 고위간부께서 그러한 바람을 언급해서 그것 가지고서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는 아니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는 아닙니다. 제가 특정 기관의 어느 분이라고 언급하면 그러는데, 기자들에게 그분의 바람을, ‘우리의 바람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더 저희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경제부처의 입장에 의해서 저희 정책 결정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고, 아마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분 개인적인 의견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기타 안건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 위원님 걱정하신 것 반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통위가 더 저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자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음 위원회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 최성준 위원장

- 연말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는 수요일, 그다음 주는 목요일에 그렇게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23일 2시와 31일...

○ 최성준 위원장

- 31일 예정되어 있지요?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예,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2분 폐회 】